

2020 안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

이 자료는 2020년도 안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를 위해 작성되었으며, 사업별로 지원 대상 및 자격,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

※본 자료는 연초 사업계획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contents

-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내 · 4
- 1. 안산시 주요사업**
 - 주요사업 -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· 6
 - 주요사업 -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· 8
 - 주요사업 - 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 건립 · 10
 - 주요사업 -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· 11
 - 주요사업 - 반월·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운영 · 12
- 2. 자금 지원**
 -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(이자차액 보전) · 14
 -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· 15
 -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(이자차액 보전) · 16
 -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· 17
- 3. 창업 및 혁신성장 사업화 지원**
 -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· 20
 - 창업 페스티벌(SUFIA) 개최 · 21
 - 디지털제조 스튜디오 운영 · 22
 -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· 23
 - 시제품 제작 지원 · 24
 - 미래혁신기술 융합 신제품·신기술 개발 지원 · 25
 -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· 26
 -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· 27
 - 기술닥터 사업 · 28
 -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· 29
 -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· 30
 - 안산 IT·SW기업성장지원사업 · 31
 -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사업 · 32
 -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지원 사업 · 33
 -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 · 34
 - 청정 공정 확산 사업 · 35

4. 국내외 마케팅 지원

- 해외유망시장 개척단 운영 · 38
-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· 39
- G-Fair Korea 안산시 단체관 운영 · 40
- 해외지사화 사업 · 41
- 맞춤형 국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· 42
-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· 43
-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(경기TP) · 44

5. 기업환경 개선 지원

- 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 · 46
- 기업 SOS넷 운영(기업애로 해소) · 48
-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· 49
- 기업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· 50
-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 · 51

6. 기업민원 처리

- ONE-STOP 공장설립(등록) 민원 처리 · 54
- 건축 인·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· 55
- 도로 점용허가 민원 처리 · 56
-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기타 제증명 발급 · 57

7. 일자리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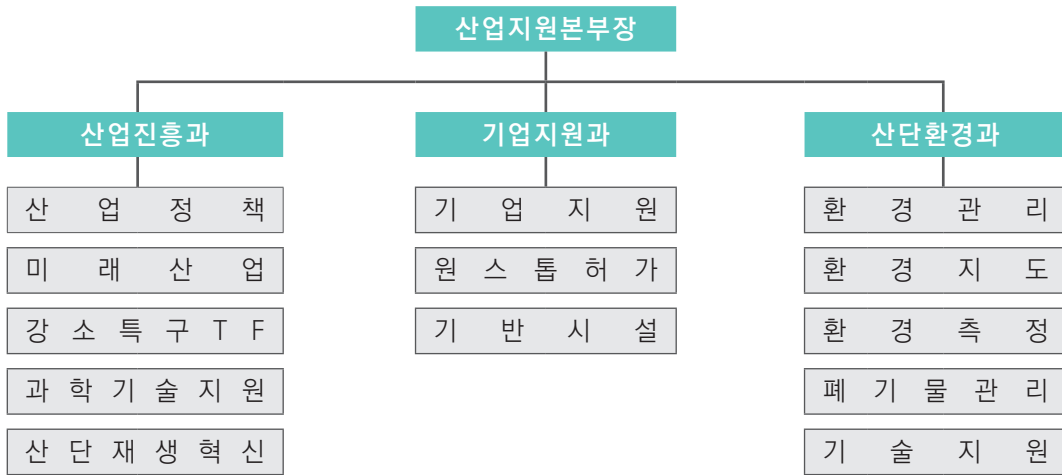
-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 · 60
- 안산919 취업광장 운영 · 61
- 동행정복지센터 「일자리 상담 창구」 운영 · 62

8. 기타 정보

- 중소기업 확인 요령 · 64
- 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요령 · 65
-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 · 66
-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· 69
-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· 74
- 중소기업 지원기관(단체) 연락처 · 75

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내

● 조직 : 3 과 13 팀



● 주요업무

부서명	주요업무
산업진흥과 (481-210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 구조개선 및 정책 개발 • 안산스마트허브 재생·혁신 추진 •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• 과학기술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(ASV) 활성화
기업지원과 (481-228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 • 기업SOS시스템 운영 등 기업애로 해소 • 건축인·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• 공장설립 및 등록 •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•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• 산단 내 제설 및 수해 대책
산단환경과 (481-289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단 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·점검 • 환경오염 배출업소 교육 및 지역예코혁신 사업 • 악취종합 상황실(U-Clean 통합시스템) 운영 • 산단 내 폐기물·토양·비산먼지·소음진동 관리 •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및 기술 지원 • 염색단지 백연(OIL-MIST)제거 개선사업

제 1 장

안산시 주요사업

- 주요사업 -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
- 주요사업 -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
- 주요사업 - 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 조성사업
- 주요사업 -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
- 주요사업 - 반월·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운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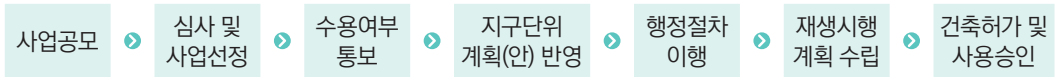
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

● 재생사업 개요

- 기간/위치 : 2015. 2. ~ 2025. 12. / 염색단지과 서해선 일원
- 규모 : 5,722,600㎡(반월산단의 39%)
- 사업비 : 468억 원(국비 234, 지방비 234)
- 사업내용 : 기반시설 확충, 유치업종 첨단화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
 - 기반시설 : 진입도로 신설(0.8km), 주차장(6), 공원(4), 도로정비 1식
 - 민간개발 : 민간공모를 통한 복합용지개발(258,000㎡)

●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(복합용지) 공모

- 추진 근거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39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6
- 복합용지 개요
 - 공모 위치 :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전환가능 지역
 - 대상 면적 : 258,000㎡(산업시설용지만 해당)
 - 공모 일정(응모 기간) : 2019. 12. 30. ~ 2020. 3. 28.(90일간)
 - 참가 자격
 -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
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자
 - 평가·심사 계획
 -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(공모심사위원회) 심사 후 사업선정 예정
 - 사업신청 등 작성지침
 - 안산시 공고 제2019-2228호(2019. 12. 30.)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참고
- 복합용지 사업추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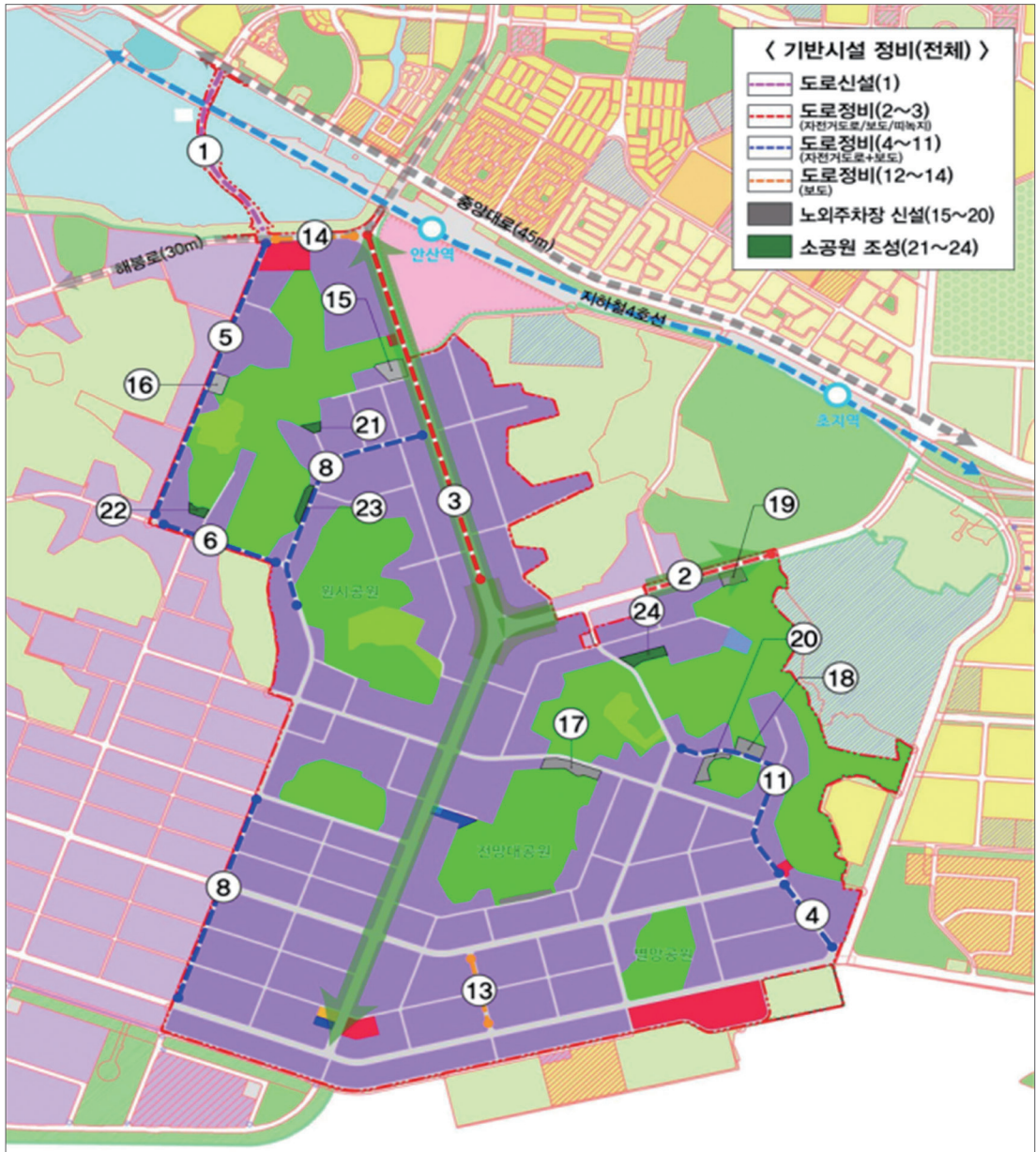


[복합용지 개념도]



※ 산업시설 외 지원시설의 허용용도는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반공업지역 허용용도로 한함.

재생사업지구 현황도



※ 재생사업지구 내 재생사업은 향후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위치 및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.

문의처
관련기관

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단재생혁신팀 Tel. 031-481-2856
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Tel. 044-201-3681



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

● 특구개요

- 위치 :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



- 지구별 기능

구분		주요기능
기술핵심기관	R&D 거점지구	한양대학교 ERICA 연구개발, 기술사업화지원, 인력양성
배후공간	사업화 촉진지구	경기테크노파크 지역혁신 사업/배후 산업단지 거점
		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, 인력양성
		한국전기연구원 전력 IT, 전기기기 등 기술개발
		한국산업기술시험원 평가, 인허가 관련 시험/인증지원
사업화 거점지구	시화MTV 산업단지 기술이전 기업 입주, 창업공간 활용	

- 특화분야 : ICT 융복합 부품 소재
- 주요내용 : 기술핵심기관(한양대 ERICA)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기업에 이전하여 'ICT융복합 부품소재' (특화분야) 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 육성

● 연구개발특구 입주혜택

- 특구 육성사업 참여
- 입주기관이 특구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기업, 및 첨단기술기업으로 승인·지정 받은 경우 아래의 세제혜택 지원
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세·법인세 (국세) : 3년간 100%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 • 취득세 (지방세) : 5년간 50% 감면 • 재산세 (지방세) :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% 감면
------	---

연구소기업 요건	첨단기술기업 요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 중 20% 이상을 직접 출자해 연구 개발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첨단기술 보유 •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% 이상 •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% 이상

● 입주(변경) 절차





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 건립

● 사업개요

- 기간/위치 : 2015. 4. ~ 2021. 3. / 단원구 원시동 782번지(원시운동장)
- 사업내용 : 공공임대주택 공급 232세대(산업단지 근로자 90% 및 고령자 10%)
 - 대지면적 : 6,457.4㎡(공동주택 부지 5,655㎡, 도로신설 802.4㎡)
 - 연면적 : 9,475.1㎡(지하 1층 / 지상13층)

연번	세부공급면적(㎡, PY)	공급호수	대상자	임대료	비고
	단위세대(전용면적) 단위 ㎡				
1	17㎡(5평)	112	근로자	주변시세의 80%	원룸
2	22㎡(6.6평)	120	근로자		원룸

- 사업비 : 18,224백만원
- 시행자 : 경기도시공사

● 지원내용

- 저렴한 임대료(주변시세의 80%)
- 보증금 이자지원(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액 40%)
-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(근생시설, 옥상정원 / 캠핑시설, 휘트니스센터 등)



위치도



조감도



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

● 사업개요

- 위치 :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(화랑유원지 내)
- 규모 : 부지 13,000㎡, 연면적 5,039㎡(지하 1층, 지상 3층)
- 사업기간 : 2012. 11. ~ 2021. 11.
- 사업비 : 25,000백만원(건축 17,067 / 전시 6,120 / 감리 1,813)
- 주요시설 : 전시시설·교육시설·수장시설·휴게편의시설·야외전시장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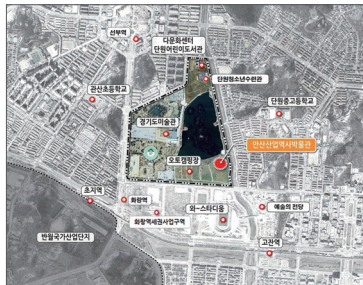
● 소장품 공개구입 안내

- 수집대상
 - 안산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분야별 부품 및 완제품
 - 근대 산업 관련 산업 기계 및 대표적인 생산품, 목록집
 - 산업단지 및 기업 초기 사진, 영상, 인쇄·기록물, 도면 및 지도류
 - 근로자 개인물품(작업복 및 도구, 업무수첩, 작업일지 등) 및 근로 관련자료
 - 산업관련 예술품(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조형물 등) 및 기타
 - 산업화 이전 인근 지역사자료(역사문화, 민속, 예술, 생활사 등)
- 신청기간 : 연 2회 공개구입 공고시 신청 접수(상하반기)
- 구입절차 : 서류접수 → 예비 심사 → 실물접수 → 감정평가위원회 심의 → 선정 및 구입계약

● 홍보사진



조감도



건립부지



전시연출(안)



반월·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운영

●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, 산업단지 내 기업간 데이터 연결·공유로 동일 업종·밸류체인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·스마트화 되는 산단 구축
- 대상지 : 반월·시화 국가산업단지
- 사업기간 : 2019년 ~ 2022년
- 스마트산단사업단 구성(2019. 3. 28.)
-위치 :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3층

● 추진전략(목표)

- 산단 내 스마트공장 확산 및 데이터 공유형 「제조혁신」
- 「쾌적한 근로·정주환경 개선」을 통한 근로자 만족도 제고
- 「창업과 신산업 활성화」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



문의처
관련기관

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정책팀 Tel. 481-2102
경기반월시화스마트산단사업단 Tel. 070-8895-7581

제 2 장

자금 지원
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(이자차액 보전)
-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
-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(이자차액 보전)
-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

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(이자차액 보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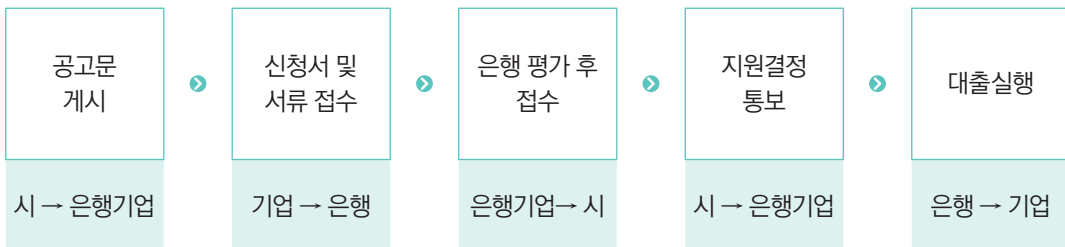
●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소기업(모든 업종)
-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, 창업보육센터,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
-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- 조례 제2조 제4호의 지식·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
-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
● 지원내용

- 융자규모 : 1,200억원(상반기 700억원, 하반기 500억원)
- 지원방법 :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이자차액(1.5~1.75%) 보전
※ 여성기업 중 안산시중소기업대상 또는 장관급이상 수상 업체에 대해 0.05% 추가 지원
- 융자한도 : 5억원 이내(전년도 매출액의 1/3 이내)
-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: 1~3년, 은행별 기준금리
- 융자취급 금융기관 : 협약 금융기관 9개(수도권 내 지점에 한함)
(기업, 농협, 국민, 신한, 우리, 스탠다드차타드, 하나, 산업, 씨티)

● 지원절차



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

● 지원대상

-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

●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71억원
- 지원방법 :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
- 지원한도 : 업체당 2억원 이내(전년도 매출액의 1/3 범위 내)

● 지원절차



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(이자차액 보전)

● 사업개요

- 기간 : 2020. 1. ~ 12.
- 융자 금액 : 업체당 10억원 이내
- 지원 금리 : 대출금리 변동(안산시에서 대출이자 보전)
- 융자 기간 :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- 취급 은행 : 농협중앙회·기업은행·하나은행
- 담보 등 :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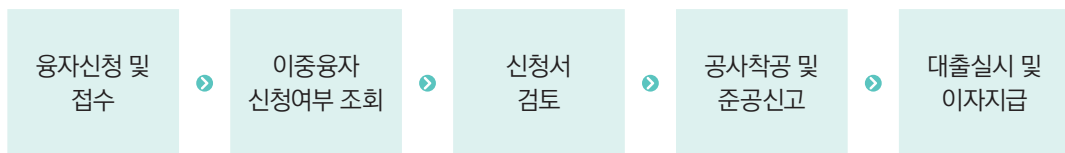
● 지원대상

- 융자지원대상
 -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시설을 구입·설치·변경하는 경우
 - 약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, 대기 TMS 설치
 -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·방지시설(VOC 제거시설) 등
 -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TMS설치
 -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
- 융자제외대상
 -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
 - 대상시설을 이미 설치완료 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
 - 다른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,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

● 지원내용

- 융자금 10억원 이내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보조지원

● 지원절차



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

● 사업개요

- 기간 : 2020. 1. ~ 12.
- 예산 : 73억원
- 지원근거 :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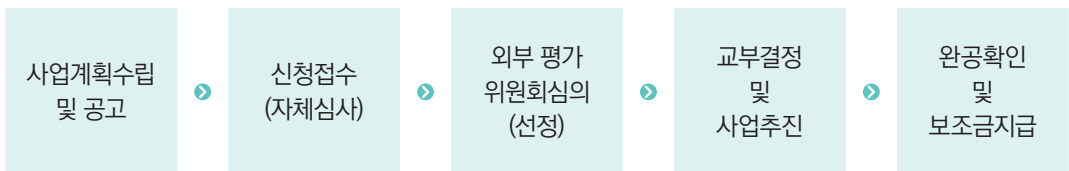
● 사업대상

- 소규모사업장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지원

● 지원내용

- 보조금 지원 한도액
 - 교체설치 : 최대 2.7억원
 - 설비별 용량별 한도액 환경부 사업지침 참조
- 보조금 지원 보조율
 -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 지원한도액의 90% 이내 (국비 50%, 도비 20%, 시비 20%, 사업자부담 10%)
-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
 -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·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
● 지원절차



제 3 장

창업 및 혁신성장 사업화 지원

-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
- 창업 페스티벌(SUFIA) 개최
- 디지털제조 스튜디오 운영
-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
- 시제품 제작 지원
- 미래혁신기술 융합 신제품 · 신기술 개발 지원
-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
-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
- 기술닥터 사업
-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
-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
- 안산 IT · SW기업성장지원사업
-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
-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· 확산 지원
-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
- 청정공정 확산 사업

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

● 사업개요

- 대상 :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여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
- 사업규모 : 청년큐브 3개소 50실(팀)
 - 한양캠프(사3동 한양타운 10실), 예대캠프(월피동 광덕시장 20실)
 - 초지캠프(초지동 신명트윈타워 20실)

● 지원내용




- 창업공간(사무실, 커뮤니티 공간, 기본집기 등) 및 회의실, 전시관 등 부대시설 제공
- 창업교육, 컨설팅, 멘토링 등 창업 지원

● 지원절차

- 입주신청 : 청년큐브 홈페이지(<https://www.youthcube.net>)



● 청년큐브 현황 : 총 3개소

구분	예대캠프	한양캠프	초지캠프(CineLab안산)
조성연도	2016년		2017년
캠프사진			
규모	20실, 816㎡	10실, 314㎡	20실, 2,578㎡
특징	영상, 공연 등 문화분야 창업공간 제공, 교육·마케팅·컨설팅 지원 등	IT(웹), 게임개발 등 기술분야	(구)영화관 → 복합 창업공간 구축 사무공간, 팝업, 공연장, 전시장 등

문의처

안산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Tel. 481-3984
 경기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센터팀 Tel. 492-9901/9948

창업 페스티벌(SUFIA) 개최

● 사업개요

- 행사명 : SUFIA 안산 스타트업 페스티벌
- 행사일시 : 2020. 11월경
- 장소 : 미정
- 참가대상 : 창업기업, 창업관심자, 시민 등
- 주최 : 안산시·SUFIA(Start-up United Festival In Ansan)
- 공동주관 : 한양대, 안산대, 경기TP, 안산시
- 협력기관 : 중진공 POST-BI, 신안산대, 서울예대, 청년창업사관학교, 한국호텔 관광실용전문학교, 각 대학 창업동아리
- 주요내용
 - 안산시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지원기관 소개, 유공자 표창
 - 창업 특강 & 토크콘서트
 - 창업기업 홍보,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
 - 채용(취업) 박람회, 창업마켓, 푸드트럭 운영 등



1인 크리에이터
특강



토크콘서트
“안산시 창업정책의 모든 것”



창업기업 홍보부스 및
창업마켓 운영

디지털제조 스튜디오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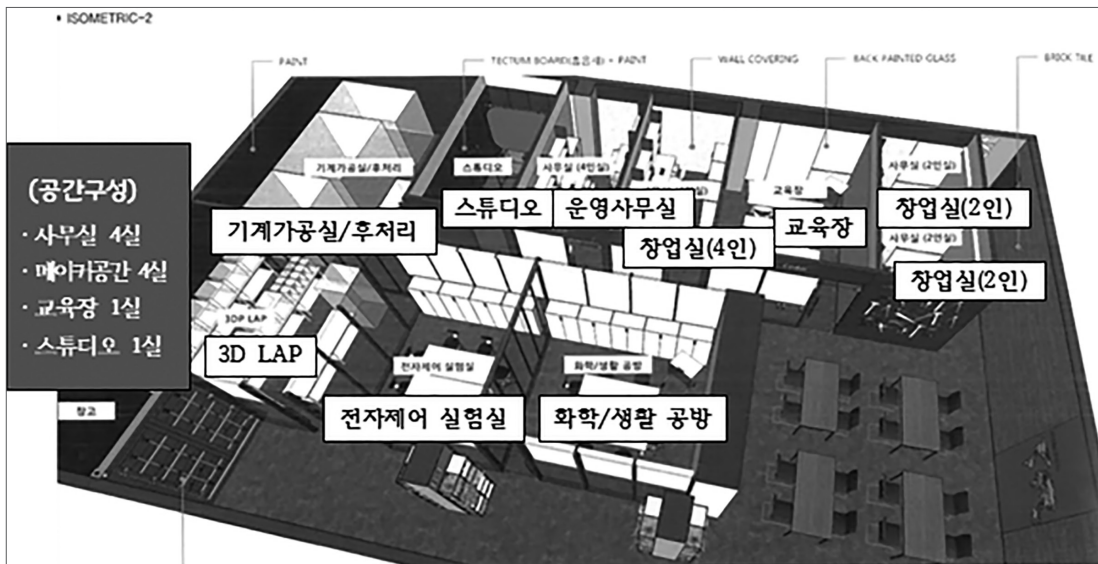
●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잠재력 있는 성장 단계 기업의 시장진입 및 제조 기술 지원
- 위 치: 초지동 원포공원1로 59(초지동) 초지캠프 내
- 운영기관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(안산소재)
- 사업대상: 관내 창업기업 및 중소·중견기업, 시민 등
- 운영 시간 및 인력: 09:00~18:00 / 6명(Team Leader 3명 + Operating Manager 3명)
- 신청방법: 청년큐브 홈페이지(<https://www.youthcube.net>) 온라인 신청

● 지원내용

- 동작시제품 제작, 시생산제품 소비자테스트베드, 제조엔지니어링컨설팅, 사업화 블랜딩 통합 서비스, 디지털제조 아카데미 운영

● 시설현황(배치도)



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

●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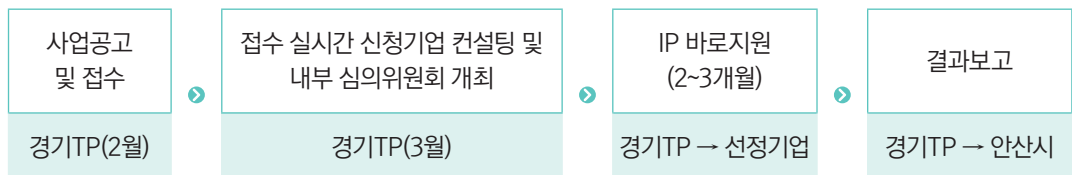
- 지원대상 :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(IP) 신청건에 대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
- 지원규모 : 총 6건
-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	지원기준	지원한도	분담금
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	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	3D 영상 제작	접수당시 특허 등록건	기업당 2건	30% (현물 10% + 현금 20%)
	특허맵	IP동향 조사·분석 및 활용전략 수립	IP 조사분석 필요건		
	디자인맵	제품/포장/목업	접수당시 특허 등록/출원건		
	디자인개발				
브랜드개발	신규/리뉴얼				
해외권리화 비용지원	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, 번역료, 출원 관납료 지원		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결과물		
기타	국내·외 IP 컨설팅	중소기업 IP 컨설팅	-	-	없음

- 전문 지도기관의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

※ 보조금 교부 전 중도포기 또는 주사무소(본사)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● 지원절차



문의처

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. 481-2624
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Tel. 500-30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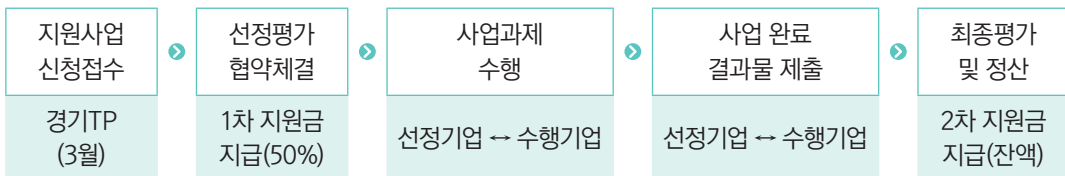
시제품 제작 지원

●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제조기업
- 지원규모 : 총 30개사
- 지원금액 : 500만원/기업당 ※기업자부담 : 지원금의 10%, VAT 별도(기업부담)
- 지원방법
 - 선정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제작 지원분야를 선택
 - 선택한 지원분야 수행기관을 기업이 직접 섭외하여 사업비 범위 내 과제 추진 (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)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 기업수
시제품제작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디자인 설계(Design Mock-up 포함) • 시제품제작(워킹모형) • 금형제작 	30개사 (5백만원/기업)
예시 >	 	

● 지원절차



문의처

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. 481-2624
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Tel. 500-3046

미래혁신기술 융합 신제품·신기술 개발 지원

●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
- 지원규모 : 총 5개 과제(20백만원/기업당)
※ 10% 이상 기업자부담, VAT 별도(기업부담)

● 지원내용 : 신제품,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

- 기존 제품에 혁신형 기술을 융합,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제품·신기술 개발 지원
- 신제품 개발부터 연구개발, 시험분석 및 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

● 미래혁신기술

- 미래선도기술 : 지능형인프라, 스마트이동체, 융합서비스, 혁신성장동력 관련 산업
- 미래유망기술 : 신체증강휴먼, 웰니스 맞춤형관리,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유망기술 관련 분야
- 4차 산업혁명기술 : 인공지능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, 3D프린팅, 지능형 반도체, 첨단소재, 드론 등

●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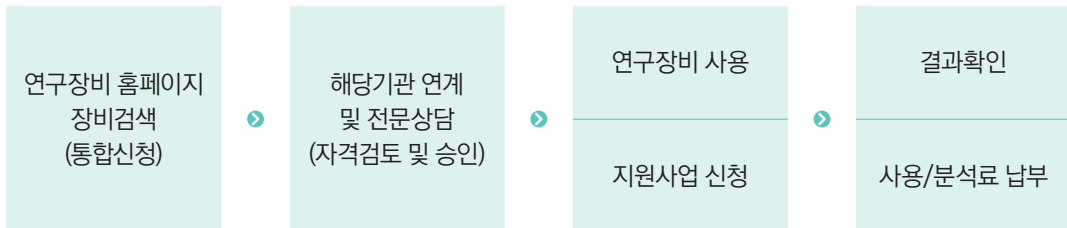


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

●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2. ~ 12.
- 지원내용 :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안산시 중소기업에게 제품개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
- 예 산 : 총 96백만원(안산시 50백만원, 경기도 46백만원)
- 지원금액 : 최대 800만원/기업당
※기업자부담 : 지원금의 30%, VAT 별도(기업부담)
- 신청방법 : 홈페이지에서 신청(gginfra.gbsa.or.kr)
- 전담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
- 참여기관 : 39개 기관(도내 공공기관, 대학, 민간기업 등 연구장비 보유 1,629종)

● 지원절차



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

●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
- 지원규모 : 10개 과제 내외
 - 과제당 안산시 지원금 48백만원 내외
 - 기업 자부담 20% 이상(현금 20% 이상)
- 총사업비 : 5억원(전액시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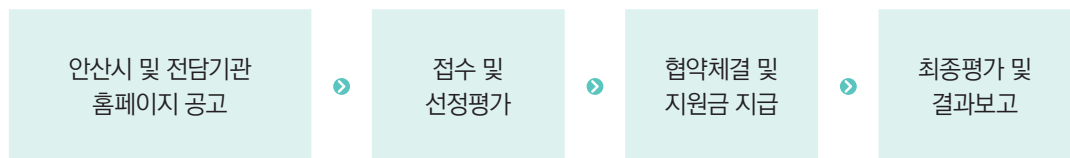
●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일반과제 및 전략과제로 구분 추진
 - 전략과제 : 뿌리산업 업종(주조·금형·용접·소성가공·표면처리·열처리)

반월·시화국가산업단지내 자금, 인력 및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성장 및 기술 고도화 지원 필요함(기업지원정책 소외기업 적극 발굴)

- 일반과제 : 뿌리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
- 지원범위 : 신제품·신기술 연구개발과제,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, 추가 기술 개발과제로 사업화 가능한 과제
- 기타 지원내용 : 전담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
 - 현장애로기술지원, 전주기적 문제해결 지원(시험분석 지원) 등

● 지원절차



기술닥터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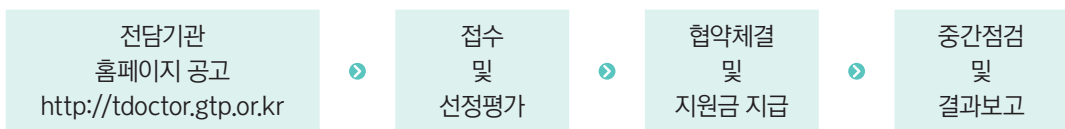
●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산·학·연의 연구자원(인력·장비·기술·정보)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
-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- 지원대상 :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
- 사업비 : 768백만원(시비 538백만원, 도비 230백만원)
- 전담기관 : (재)경기테크노파크

● 지원내용

단계	프로그램	내용	기업부담	선정방법
1단계	현장 애로기술지원	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「1:1 맞춤형 애로해결」	-	예산범위 내
2단계	중기 애로 기술지원	일반	총 비용의 30%	선정평가
		고용 연계		
3단계	상용화지원	신규 제품화 지원(제품설계, 디자인, 시제품제작, 시작금형 제작의 전과정에 대한 지원, 기술지원인력, 기술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 가능)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, 고용 창출을 유도	총 비용의 30%	선정평가
단계별 검증 지원	시험분석 설계/시뮬레이션 3D프린팅	각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, 설계/시뮬레이션, 프린팅 등 지원	총 비용의 30%	선정평가

● 지원절차



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

●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미래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
- 사업기간 : 2019년 ~ 2022년(총 4년)
- 사업비 : 50억원(4년)
- 지원대상 : 안산시 소재 중소·중견기업
- 전담기관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융합생산기술연구소)
- 수행기관 : 안산사이언스밸리(ASV) 기관
- 사업내용 :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(ASV)기관 간 협업으로 R&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

●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16개 과제
 - 기술분야 : ① 기계소재 ② 전기전자 ③ 화학 ④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
- 지원유형
 - 시장창출 기술개발 - 기 확보된 기술의 심층 연구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화 지원
 - 제조혁신 기술개발 - 시장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
 - ASV협동 기술개발 - 2개 이상 ASV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



강소기업 육성 전략 간담회



컨소시엄 워크숍

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

●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기술 중개자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, 기술거래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글로벌 기술기업 창출
- 사업기간: 2020. 1. ~ 12.
- 지원대상: 안산시 소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희망 중소기업
- 전담기관: (재)경기테크노파크

● 지원내용

- 국내외 기술거래 수요 발굴 및 가공
-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자금 연계
- 글로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



찾아가는 수요기술 공모장터



기술교류 박람회

● 지원절차 (세부 단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지원될 수 있음)



안산 IT·SW기업성장지원사업

●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안산시 IT·SW기업대상 마케팅 지원, 기술지원,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 및 경쟁력 강화
-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- 사업비 : 300백만원(전액시비)
- 지원대상 : 안산시 IT·SW중소기업
- 전담기관 :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

● 지원내용

- IT·SW 품질향상 지원(국내외 규격인증, 제품 시험분석 등)
- IT·SW 상용화 지원(기술권리화 지원, 제품 상용화 지원 등)
- 맞춤형 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



싱가포르 정보통신박람회 참가



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례

● 지원절차



문의처

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과학기술지원팀 Tel. 481-2967
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Tel. 492-9948

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사업

●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- 사업비 : 1,230백만원(도 600백만원, 시 234백만원, 타 시군 396백만원)
- 주관기관 : (재)경기테크노파크

● 지원내용

- 뿌리기술 R&D 개발지원
 - 지원대상 :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
 - 지원규모 : 기업 당 20백만원 이내
 - 지원내용 : 뿌리기업의 기술개발, 시제품(금형틀 등) 제작비지원
- 뿌리기업 인증 획득 지원
 - 지원대상 :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
 - 지원규모 :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
 - 지원내용 :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, 인증비용 지원
-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
 - 지원대상 :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
 - 지원규모 :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
 - 지원내용 :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대행 컨설팅 지원, 법규에 따라 의무 구비 장비 지원
- 시험분석 지원
 - 지원대상 :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
 - 지원규모 : 기업 당 1백만원 이내
 - 지원내용 : 뿌리산업과제(또는 제품)에 대한 시험분석(성능인증) 비용지원

● 지원절차 (세부 단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지원될 수 있음)



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지원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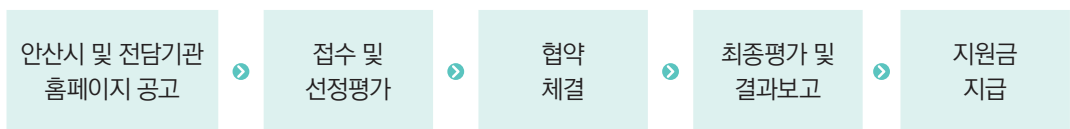
●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- 지원대상 : 안산시 소재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(기초, 고도화)에 선정된 기업
- 지원규모
 - 스마트공장 구축 : 15개사 내외, 최대 1천만원 이내
 - 고도화 지원 : 9개사 내외, 최대 2천만원 이내
- 총 사업비 : 4억원(전액시비)

● 지원내용

- 스마트공장 구축(기초)
 - 제품설계,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 -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구입 비용 지원 등
- 스마트공장 고도화
 -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 등

● 지원절차



환경오염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

● 사업개요

- 기간 : 2020. 1. ~ 12.
- 구성 : 안산시(산단환경과),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, 한국환경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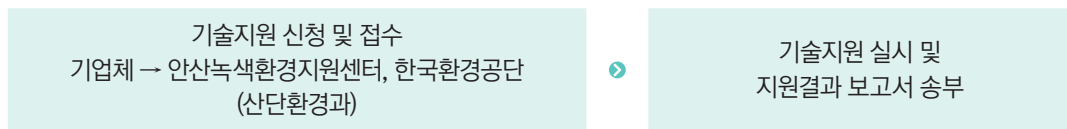
● 지원대상

-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지원(보조금 및 융자) 사후관리 대상 및 기술지원 신청업체
-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사업장
- 민원유발업소 및 악취도 3도(관능법) 이상 악취다량배출사업장

● 지원내용

- 배출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선정 및 기술자문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문제점 해결과 악취발생 저감방안 지도
- 악취다량배출사업장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은 환경기술 전문기관인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동사후관리 및 기술지원

● 지원절차



청정 공정 확산 사업

● 사업개요

- 목적 : 청정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
- 기간 : 2020. 2. ~ 12.
- 예산 : 220백만원(국비 120백만원, 시비 100백만원)
- 사업 지원 : 산업통상자원부/안산시
- 주관 기관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주)에코앰파트너스

●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: 안산시 소재 10인 이상 상시 근무자의 중소기업
 - 도금, 염색, 기계, 부품 등 제조기반 중소기업
 - 녹색기술 보유기업

● 지원내용

- 청정 생산 진단지도 컨설팅
 -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진단·지도
 - 자원 생산성 향상 진단·지도
 - 용수, 폐기물 등 산업 환경 이슈 해결
 - 화학물질 규제 대응 체계구축 및 지도
 - 환경보고서, 환경관련 인증획득 지원 등

● 지원절차



제 4 장

국내외 마케팅 지원

- 해외유망시장 개척단 운영
-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
- G-Fair Korea 안산시 단체관 운영
- 해외지사화 사업
- 맞춤형 국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
-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
-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(경기TP)

해외유망시장 개척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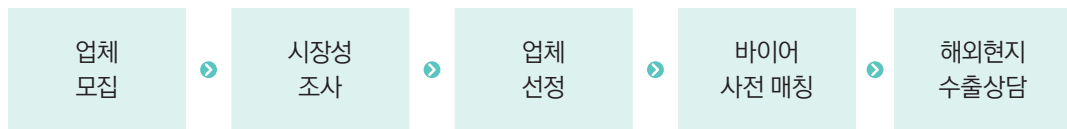
● 개요

- 시기 : 2020. 2. ~ 12.
- 파견지역

시기	파견국가	규모	업체 최종선정
계	4회(7개 지역)	32개사	
6월	CIS(타슈켄트,알마티)	8개사	파견 1개월 이전
7월	미국(LA)	8개사	"
9월	베트남(호치민, 하노이)	8개사	"
10월	인도(뭄바이, 첸나이)	8개사	"

- 파견규모 : 총 30개사 내외
- 상담품목 : 종합 품목
- 지원사항 : 바이어 발굴, 현지시장 정보제공, 상담장 임차비 및 통역, 항공료 50%
※ 참가기업 부담 : 항공료 50%, 숙박비, 식비 등 체재비
- 주요내용 : 사전매칭에 의한 바이어, 중소기업간 1:1 수출상담

●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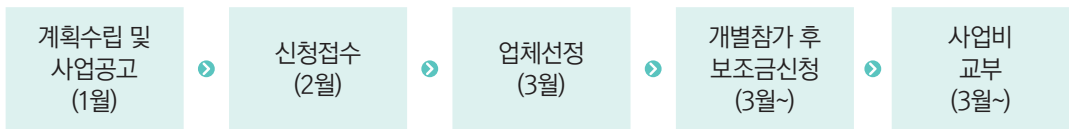


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

● 개요

- 모집기간 : 2020년 2월 예정(연 1회)
- 대상 : 관내 중소기업
- 지원규모
 - 국내 12개사(업체별 200만원 이내)
 - 해외 11개사(업체별 500만원 이내)
- 지원사항
 - 국내 : 부스임차료, 장치 설치비
 - 해외 : 부스임차료, 장치 설치비, 물품 운송비, 1인 항공료 50%

● 지원절차 (※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)



G-Fair Korea 안산시 단체관 운영

● G-Fair Korea(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) 개요

- 특 징 :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
- 개최장소 : 고양 KINTEX
- 전시품목 : 종합품목(생활용품, 레저용품, 의료용품, IT제품 등)

● 2020 안산시 단체관 운영 개요

- 지원대상 : 안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기업
- 규 모 : 15부스/15개사 내외(부스 당 12㎡)
- 참여업체 모집 : 2020년 5월경
- 참가업체 지원사항
 - 기본 조립부스(안내데스크, 상담테이블, 의자, 전기 등 비품 포함) 지원
 - 국내외 바이어 연계 지원(수출·구매상담) 및 각종 홍보 지원
 - ※ 1개社 당 1부스 지원 - 추가 부스 신청 시 기업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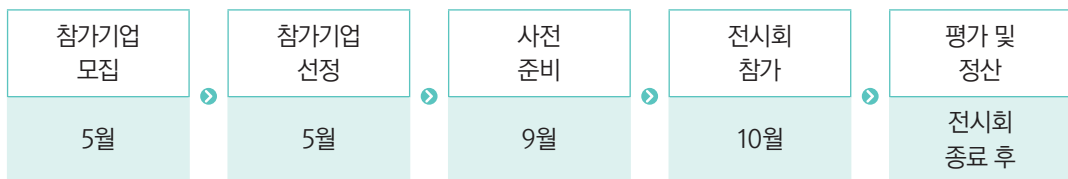


전경1 - 안산기업 단체관



전경2 - 안산기업 단체관 지원 사례

● 지원절차 (※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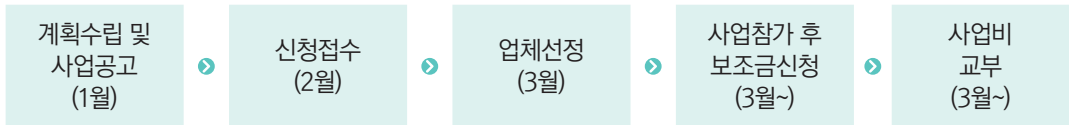


해외지사화 사업

● 개요

- 모집기간 : 2020년 상·하반기(연 2회)
- 지원기간 : 지사화사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
- 지원대상 : 관내 중소제조기업 10개사 내외
- 지원규모 : 업체당 250만원 이내(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70%)
- 사업비 : 2천만원
- 지원사항
 - 신규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
 - 해외바이어 반응조사 등 제반활동 지원
 -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성 조사
 - 현지 세일즈 출장시 제반활동 지원
 - 기존 거래선 관리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

● 지원절차 (※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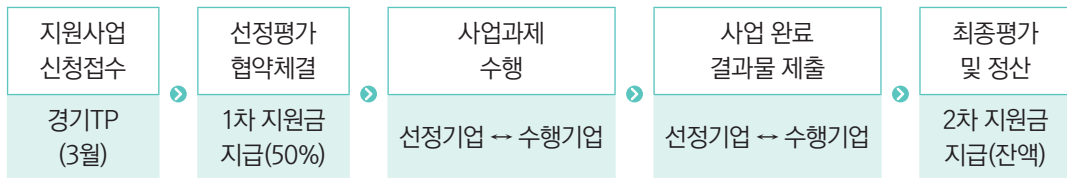
맞춤형 국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

● 개요

- 지원대상 :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
- 지원규모 : 총 40개사(3백만원/기업당) (*10% 이상 기업 자부담, VAT 별도)
- 지원내용

지원사업	지원내용	기업수
온라인마케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국문/영문) 홈페이지/쇼핑몰 제작 및 리뉴얼 • 국내외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및 검색엔진마케팅 (네이버, 다음, 구글 등) 지원 • 온라인 오픈마켓(옥션, G마켓, 11번가) 등록 및 광고지원 • 네이버 스토어팜 쇼핑몰 입점 및 구축 • SNS(블로그/페이스북) 제작 	총 40개사 (3백만원/ 기업당)
제품 홍보 디자인개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달로그 및 브로셔 제작 • 제품홍보 상세페이지 제작 <국문/영문> •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• 포스터 및 배너 제작 	
해외마케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마케팅 전문기관(콤파스, ec21, 알리바바, eBay 등)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(바이어 발굴 및 해외 수출 판로 개척지원) 	

● 지원절차



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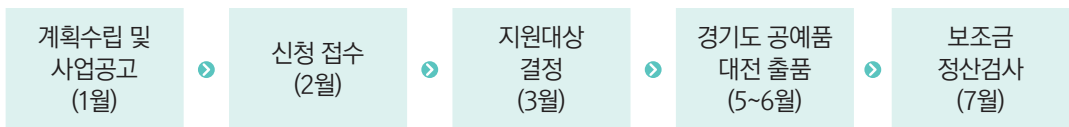
● 사업목적

-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
- 민속공예기술 전승 및 우수공예품의 판로기반 조성
-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 및 시민에게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기회 부여

●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관내에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
- 사업비 : 5백만원
- 지원금액 : 업체당 1백만원 내외
- 지원분야 :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,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(목·칠, 도자, 금속, 섬유, 기타공예 등 6개 분야)

● 추진절차 (※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)



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(경기T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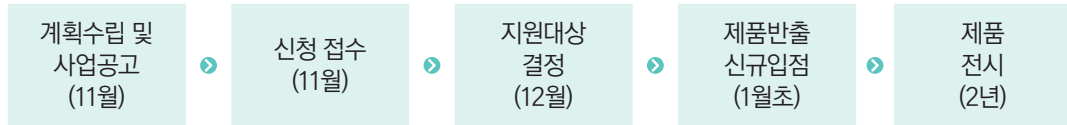
● 사업개요

- 설치장소 : (재)경기테크노파크 1층 로비(상록구 해안로 705, 사동)
- 대상 :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(본사 또는 공장) 제품
- 전시비용 : 무료
- 전시규모 : 8개 전시부스
- 전시부스규격(가로×세로×높이) : 70cm×50cm×90cm

● 제품전시기간 : 2020. 1. ~ 2021. 12.(2년간)

- 2020년~2021년 신규모집 완료(2020년 1월)
- 전시기간 만료 후 신규모집은 2021년 11월 공고예정

● 추진절차 (*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)



제 5 장

기업환경 개선 지원

- 기업SOS넷 운영(기업애로 해소)
- 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
-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
- 기업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
-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

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

● 통근버스 운영 개요

- 운행기간 : 연중
- 운행대수 : 45인승 10대(안산 5대, 시흥 5대)
- 운영형태 : 전철역* 연계 산업단지 내 출퇴근 셔틀버스 방식
*5개역(안산역, 원시역, 상록수역, 오이도역, 정왕역)
- 운행횟수 : 1일 45회(출근 20회, 퇴근 25회 / 안산, 시흥 각 5개 노선)
- 이용요금 : 무료(추후 유료로 변경될 수 있음)

● 운행노선 및 시간표

구분	호차	출근시간	퇴근시간	주요노선(경유지) ※퇴근은 역순
시 흥 권 역	1	07:00/07:50	17:40/18:40/19:35	오이도역→에스티팜→단석산업→대성산업→서울제약 →MTV단지 대용산업→비케이스틸
	2	07:00/07:45	17:40/18:35/19:35	정왕역→시흥초교→대원스틸→대한통운→대한강재 →MTV단지 한림금형강
	3	07:00/07:55	17:40/18:40/19:40	정왕역→산기대→유통상가→덕산파이프→태양에스티 →MTV단지 아남→진명프리텍
	4	06:55/07:55	17:40/18:45/19:25	정왕역→캡센→만수철강→제이엔피→가경철강 →MTV단지 신영공업식당
	5	07:00/07:50	17:40/18:35/19:20	정왕역→글로벌스자동차→코포모→대덕전자 →두성특장차→원우정공
안 산 권 역	1	06:40/07:30	17:40/18:40	안산역→중소기업지원센터→(주)에이디티→근린공원 →필립스→백산철강→부성특수파이프→대신전선 →신기산업
	2	06:40/07:30	17:40/18:40	안산역→원정제관→다원타크라3차→우리조명 →축협안산연합사료→동아기계→삼화페인트→성림유화 →신광정공
	3	06:30/07:40	17:40/18:40	안산역→신광테크놀러지→삼보오토→삼천리열처리 →에스엠텍(피오씨)→삼양통상사거리 →반월중앙피혁협동조합→(주)휴메드
	4	06:30/07:30	17:40/18:40	원시역→에스씨엘→광천에스티→오알캠→모렉스 →캐논코리아→산일전기→다원시스
	5	06:20/07:30	17:40/19:40	상록수역→푸른마을5단지→방림→진양제약→대진동관 →현대합성→반월중앙피혁협동조합→삼화페인트2공장 →성림유화→일신→베스텍

※ 운행시간 및 노선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.

문의처

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. 481-2624
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본부 Tel. 070-8895-7597

반월·시화국가
산업단지
공동 출퇴근
셔틀버스
노선도

기업 SOS넷 운영(기업애로 해소)

● 기업 SOS넷 운영 개요

- 접속주소 : <http://giupsos.or.kr>
- 가입대상 : 기업 및 경제단체의 임직원
 - 기업체 : 대표이사, 관리부장, 총무과장 등
 - 경제단체 : 회장, 총무, 단체회원 등
- 내용
 - 기업애로 접수 및 해소
 - 기업 지원사업 안내
 - 관내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
 - 안산시 구인·구직 홍보

● 기업애로 처리절차



● 기업애로 해소 유관기관

- 안산상공회의소(회원사업팀 410-3030(내선 113))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서부센터 432-2400)
-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(입주지원팀 070-8895-7539)
- (재)경기테크노파크(기업지원단 500-3084)

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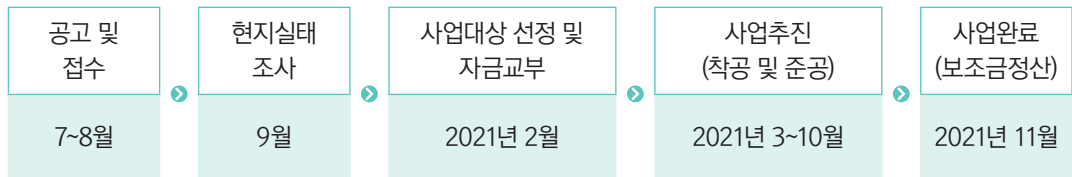
● 개요

- 지원대상 : 관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
- 지원규모 : 약 10개 기업
 - ※ 지원 업체 수는 지원 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
- 지원내용 : 작업장, 기숙사(공장 내)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(탈의실, 세탁실 포함), 휴게실 개·보수 비용의 보조

지원 가능	지원 제외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• 작업 공간 및 작업 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•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• LED조명설치(작업공간만 해당), • 자체 소방 설비 설치 및 개보수(작업공간만 해당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 •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 되지 않은 비용(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비 등)

- 지원한도 : 개소 당 3천만원 이내 (도비 30%, 시비 30%, 자부담 40%)
 - ※ 종사자 수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자부담 30%

● 선정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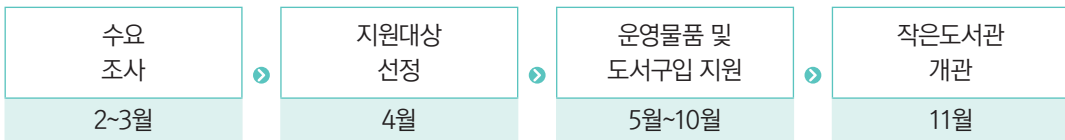


기업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

● 사업개요

- 추진기간 : 2020. 2. ~ 11.
- 지원대상 :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 희망 기업 2개소
- 지원금액 : 26백만원(1개소당 13백만원)
- 지원내용 : 산업단지지역 근로자들의 독서량 증대를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(서가, 책상 등 운영물품 및 도서 구입지원)
- 선정기준
 - 안산시 관내 기업체
 -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 우선 선정
 - 향후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고려
 - 시설규모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, 인근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

● 선정절차



● 홍보사진



2019년 (주)인바이오텍 기업체 작은 도서관 개관식



기업체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지원

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

● 기반시설 정비

- 기업민원처리 안산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(보·차도, 가로등, 보안등)정비
 - 기업체 민원사항(전화, 인터넷, 방문 등)우선 반영
 -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도로정비 건의사항 반영
 - 현장점검을 통한 노후 심화정도,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 선정

● 도로 재해(설해 및 수해) 예방 관리

- 우기철 도로 수해방지 및 동절기 제설작업 종합대책 수립
- 자체 장비 및 자재 확보
 - 제설차량 15톤 5대(임차), 5톤 1대(임차), 1톤 1대(자차)
 - 제설제 살포기 7대(15톤 5대, 5톤 1대, 1톤 1대), 제설자재(염화칼슘, 소금)
-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작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간선도로 병행 실시

● 협조사항

-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발생 예상지역 및 재해 위험지역 즉시 신고
- 우기·동절기 기업체별로 「내 공장 앞 빗물받이 청소 및 동절기 눈치우기」 협조



정비 전



정비 후

제 6 장

기업민원 처리

- ONE-STOP 공장설립(등록) 민원 처리
- 건축 인·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
- 도로 점용허가 신청 및 민원 처리
-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기타 제증명 발급

ONE-STOP 공장설립(등록) 민원 처리

● 개요

공장설립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업체에 현장 방문하여 민원처리

● 기간

연중

● 대상지역

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, 공업지역, 개별입지

● 대상업무 : 공장등록 관련 모든 민원

- 공장설립등의 승인 : 500㎡ 이상 공장의 신설·증설·업종변경 승인 등
- 제조시설설치 승인 : 기존공장에 500㎡ 이상 제조시설 설치 승인 등
- 대상지역 입주계약(변경계약) 신청
 - 대상지역 안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계약(변경) 신청 등
-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: 산업단지 입주업체, 공장설립(제조시설 설치) 승인사항의 완료신고
- 공장등록및등록변경 : 500㎡ 미만 공장의 등록 및 등록공장의 등록사항 변경신고
- 처분신고(처분신청) :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고(신청)
- 임대신고 :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 신고
 - ▶ 반월·시화국가산업단지 :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리(설립·등록 등)
 - 반월국가산업단지 Tel. 070-8895-7536~9
 - 시화국가산업단지 Tel. 070-8895-7551~9
 - ▶ MTV 국가산업단지 :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시화MTV사무소 관리(설립·등록 등)
 - 멀티테크노밸리(MTV) Tel. 070-8895-7542~3

건축 인·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

● 건축 허가·신고

- 관련법규
 - 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, 건축법 제14조(건축 신고)
- 처리절차
 - 접수 : 세움터(www.eais.go.kr) 전자접수
 - 서류확인 검토 : 관계법령 적합여부 협의 및 서류검토
 - 허가여부 결정 : 서류확인 검토 사항이 적정할 경우 허가처리
 - 결과알림 : 허가조건 및 허가에 따른 수수료 고지
 - 허가/신고 필증 교부 : 방문 시 교부 또는 우편발송



- 수수료 : 안산시 건축조례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

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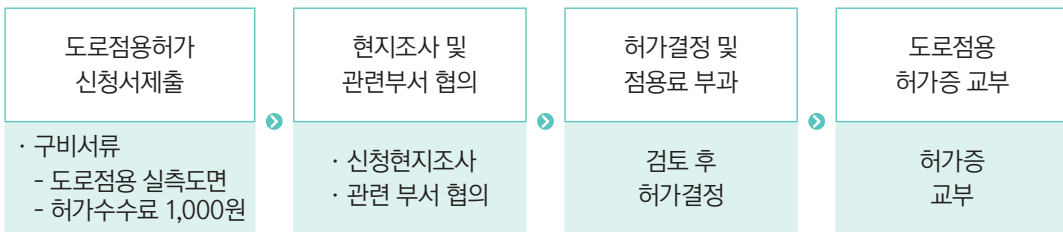
- 관련법규
 - 건축법 제20조(가설건축물)
- 구비사항
 -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(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
 - 배치도 1부
 - 평면도 1부
 - 대지사용승락서(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) 1부
- 수수료 : 안산시 건축조례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

도로 점용허가 민원 처리

● 도로점용허가 대상

- 관련법규
 - 도로법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/ 도로법 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
 -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)
- 허가대상 : 도로상에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
 - 전주·전선·변압탑·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
 - 가스관·어스양카·작업구(맨홀) 기타 이와 유사한 것
 - 주유소·주차장·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
 - 철도·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
 - 지하상가·지하실·통로·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
 - 간판·표지·깃대·주차미터기·현수막 및 아치
 -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
 - 고가도로 밑 사무소·점포·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
 -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

● 추진절차



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기타 제증명 발급

●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

- 구비서류
 - 본인(세대주 및 세대원) 신청 시 : 신분증
 - 타인 신청 시 : 위임자·피위임자 신분증, (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)위임장, 이해관계서류
- 수수료 : 400원(관내 및 타 시·군 동일), 500원(이해관계인)

●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

- 구비사항(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신청 발급만 가능)
 - 본인 신청 시
 -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
 - 재외국민 : 여권
 -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사실증명
 - 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 -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
 - (발급대상자가 직접 작성한)위임장, 위임자·피위임자 신분증, 위임자 도장
※ 민원 창구에서 방문자가 작성하는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수수료 : 인감 600원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

●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(온라인/오프라인 발급)

- 온라인 발급 : 민원24시를 통한 신청 → 기업지원과 처리 → 신청인 온라인 출력(수수료 700원)
- 오프라인 발급 : 기업지원과 방문 신청 → 공장등록 여부 확인 후 즉시 발급(수수료 1,000원)
- 구비서류(오프라인) : [대표자 신청] - 신분증
[대리인(직원) 신청] - 위임자·피위임자 신분증, 대표자 도장(또는 법인 인감), 사업자등록증, 사원증(또는 재직증명서)

●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(단원구청 1층 농협 365코너 내)

- 운영시간 : 07:00 ~ 22:00(365일)
- 발급서류 : 등·초본, 장애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등기부등본 등
※ 기타 무인민원발급 창구 : 안산시청, 와동, 호수동, 초지동, 고대병원, 원곡동 라성상가 등

제 7 장

일자리 지원

- 안산일자리센터운영
- 안산919 취업광장 운영
- 동행정복지센터 「일자리 상담 창구」 운영

안산 일자리센터 운영

● 개요

- 위치 : 안산시청 민원동 2층
- 상담인원 : 6명
- 주요업무
 - 구인신청 등록, 구직자 알선 및 인재정보 제공
 - 구직신청 등록 및 상담, 취업알선, 채용정보 제공
 -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제공(www.iansan.net → 분야별정보 → 경제일자리 → 취업정보)
 - 인근지역 소재 기업의 최근 채용정보 제공(직종별 구분)

● **지원내용** : 구인·구직 알선, 계층별 취업프로그램 운영, 취업박람회 개최

● 지원절차

• 구인업체



• 구직자



※ 구인등록은 2개월, 구직등록은 3개월간 유효하며, 지정된 기간 경과 시 재등록해야 취업알선이 가능함.

● 관련사진



안산시 일자리센터(안산시청 민원동 2층)

안산919 취업광장 운영

●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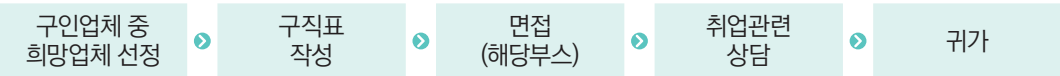
- 일시 : 매월 19일 14:00 ~ 16:00(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)
- 장소 : 안산시청 민원동(2층) 대회의실
- 참여방법
 - 구인업체 : 행사 2~3일전까지 행사 참가신청서 선착순(Fax. 403-9191) 제출
 - 구직자 : 이력서, 자격증 등 취업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행사 당일 참여

● 지원내용

- 구인·구직자 현장면접에 의한 인력 채용
 - 구인업체 : 부스별 구인업체 인사담당자 1~2명 배치
 - 구직자 : 구직표 작성 후 구인업체와 면접
- 기타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관련 각종상담 및 안내

● 지원절차

• 구인업체



• 구직자



※ 구인업체에서는 면접 기록지를 안산일자리센터에 제출

● 관련사진



동행정복지센터 「일자리 상담 창구」 운영

● 사업개요

- 목적 : 일자리 지원의 현장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대주민 취업 지원
- 운영기간 : 2020. 1. ~ 12.
- 운영장소 : 25개 동 행정복지센터
- 운영인력 : 전문 직업상담사

● 지원내용

- 동네 구인·구직자 취업알선 상담
- 상설 면접장 운영
- 희망 일 드림 박람회 개최(2020. 10월 예정)

● 지원절차



● 관련사진



동행정복지센터 상담창구

제 8 장

기타 정보

- 중소기업 확인 요령
- 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요령
-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
-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
-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
- 중소기업 지원기관(단체) 연락처

중소기업 확인 요령

- **중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<http://sminfo.mss.go.kr>)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.**

- **신청대상**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

- **신청서류**

-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
-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
-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

- **발급절차**

- 회원가입 - 로그인(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먼저 회원가입)
- 자료제출 -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(원칙)
-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방중기청으로 해당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
- 확인서 발급신청 - 메뉴 “중소기업 확인” 하단의 “신청서 작성”을 클릭
- 신청기업 및 신청자 정보 입력
- 확인서 발급완료 - 제출서류 등을 기초로 중소기업 여부 자동판정
-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출

- **유효기간**

-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

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요령

● 제출대상

- 대상업종 :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

01. 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) 제조업	05. 식료품 제조업	09. 1차 금속 제조업
02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06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10. 가구 제조업
0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07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11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0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08. 기타 제품 제조업	12. 반도체 제조업
		13. 전자부품 제조업

- 대상시설 :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(용해로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가스집합용접장치, 허가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)

● 제출시기 :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

● 제출서류 :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5호 및 첨부서류 2부

● 제출방법

- 제출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·지사
- 심사수수료 납부 :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

● 수수료 (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40호)

종류	규모	수수료(원)
13대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	가.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	84,000
	나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 미만	123,000
	다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 이상	183,000
13대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·이전·변경하는 경우	-	67,000
5개 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	가. 3기 미만	44,000
	나. 6기 미만	58,000
	다. 6기 이상	67,000
5개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	-	36,000

● 위반시 조치사항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8조)

- 미제출 등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

● 신고 대상 및 시기

-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

● 구비 서류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(신청서와 첨부서류)

● 과태료 부과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 1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미만인 경우 2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이상인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1호	90 100	90 100	90 100
나. 법 제13조제1항 단서,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미만인 경우 2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이상인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2호	90 100	90 100	90 100
다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1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미만인 경우 2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이상인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3호	90 100	90 100	90 100
라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1) 산업용지 면적이 3,300㎡ 미만인 경우 2) 산업용지 면적이 3,300㎡ 이상인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4호	90 100	90 100	90 100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마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경우 1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미만인 경우 2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이상인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5호	90 100	90 100	90 100
바.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미만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,000㎡ 미만인 경우 2) 공장부지 면적이 3,300㎡ 이상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6호	90 100	90 100	90 100
사.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)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)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7호	60 70	60 70	60 70
아.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)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)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8호	150 200	150 200	150 200
자.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(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)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9호	50	50	50
차.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)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,300㎡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,000㎡ 미만인 경우 2)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,300㎡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경우	법 제55조 제1항제1호	280 300	280 300	280 300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카. 법 제39조제3항,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1)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,300㎡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,000㎡ 미만인 경우 2)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,300㎡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경우	법 제55조 제1항제2호	280 300	280 300	280 300
타.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1)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)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	법 제55조 제1항제3호	280 300	280 300	280 300
파.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	법 제55조 제1항제4호	300	300	300
하.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	법 제55조 제1항제5호	500	500	500
거. 법 제4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10호	80	90	100
너.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5조 제1항제6호	180	190	200
더.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)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)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55조 제2항제11호	40 50	40 50	40 50

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

● 대상 사업장

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장

● 구비 서류

-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
 - 신청서 1부
 -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
 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
 - 방지시설의 일반도 등
-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
 - 신청서 1부
 - 폐수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 배출공정 흐름도 1부
 - 원료 및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등

● 과태료 부과기준 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)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1항제1호	500	700	1,000
나.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·보존한 경우	법 제82조 제1항제2호	500	700	1,000
다.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	법 제82조 제3항제1호	50	50	50
1) 물로만 세차한 경우				
2) 합성세제,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	100	100	100	
라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 제2항제1호	300	300	300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마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낙시제한구역에서 낙시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 제3항제2호	100	100	100
바.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3항제3호	60	80	100
사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1항제3호	200	600	1,000
아.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82조 제2항제2호	100	200	300
자.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 제2항제3호	200	200	200
차.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2항제4호	100	150	200
카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 (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)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1항제4호	200	600	1,000
타.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 제1항제5호	200	600	1,000
파.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2항제5호	100	200	300
하.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3항제4호	60	80	100
거.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2항제6호	100	200	300
너.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·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	법 제82조 제1항제6호	1,000	1,000	1,000
더. 법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	법 제82조 제1항제7호	500	700	1,000
러.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	법 제82조 제1항제7호	200	600	1,000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머.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 제3항제5호	60	80	100
버.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82조 제3항제6호	60	80	100

● **과태료 부과기준** (대기환경보전법)

(단위 : 만원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·회수·처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1호	100	100	100
나.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1호의2	60	80	100
다.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1호	200	200	200
라.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을 기록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94조 제3항제1호	100	200	300
마.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3호	200	200	200
바.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·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4호	200	200	200
사.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5호	100	150	200
아.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·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2항제1호	200	300	500
차.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2호	60	80	100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카.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·판매한 경우	법 제94조 제1항	1,000	1,000	1,000
타.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경우	법 제94조 제1항	500	800	1,000
파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·석탄·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6호	120	160	200
하.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3호	60	80	100
거.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7호	60	80	100
너.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·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·측정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·보존한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8호	200	200	200
더.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2	100	100	100
러.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3	100	100	100
머. 법 제51조제5항(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9호	100	150	200
버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10호	100	150	200
서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,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·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, 저공해엔진(혼소 엔진을 포함한다)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	법 제94조 제3항제3호	50	100	300
어.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	법 제94조 제5항제5호	5	5	5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저.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11호	100	150	200
처.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)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)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	법 제94조 제6항	2 1		
커.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·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6호	60	80	100
터.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	법 제94조 제5항제6호의2	60	80	100
퍼.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12호	100	150	200
허.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·점검 및 확인 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·점검 및 확인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7호	60	80	100
고.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13호	100	150	200
노.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	법 제94조 제4항제14호	100	150	200
도.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	법 제94조 제2항제2호	200	300	(3차) 400 (4차 이상) 500
로.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8호	60	80	100
모.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94조 제5항제9호	60	80	100

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

● 대상 사업장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
-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
-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(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)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- 일련의 공사(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)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(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)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
● 신고 내용

-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
- 폐기물 실적보고 등

● 구비 서류
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구비서류(문의처 연락)

● 과태료 부과기준
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폐기물 실적보고서를 기한(다음 연도 2월 말)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: 300만원 이하 과태료
-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: 100만원 이하 과태료
- 폐기물 처리 법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: 100만원 이하 과태료
- 폐기물 처리 기준이 부적정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※ 과태료·벌금·수수료 등 정확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

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외 사업장 : 안산시 자원순환과 Tel. 481-3532
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: 안산시 산단환경과 Tel. 481-2099

중소기업 지원기관(단체) 연락처

기관명	홈페이지	연락처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	www.mss.go.kr/gyeonggi	Tel. 031-201-6800
안산세관	www.customs.go.kr	Tel. 031-8085-3880
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(공장설립 등)	www.kicox.or.kr	Tel. 070-8895-7599
한국산업인력공단	www.hrdkorea.or.kr	Tel. 1644-8000
대한법률구조공단	www.klac.or.kr	Tel. 132
중소기업진흥공단(정책자금 등)	www.sbc.or.kr	Tel. 1357
기술보증기금	www.kibo.or.kr	Tel. 1544-1120
경기신용보증재단(안산)	www.gcgf.or.kr	Tel. 031-482-8402
안산상공회의소	ansancci.korcham.net	Tel. 031-410-3030
경기테크노파크	www.gtp.or.kr	Tel. 031-500-3000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센터	www.gbsa.or.kr/	Tel. 031-432-2400
한국나노기술원	www.kanc.re.kr	Tel. 031-546-6000
안산고용노동지청	www.moel.go.kr/ansan	Tel. 031-412-1992
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	http://gyeonggi.wbiz.or.kr	Tel. 031-211-0292

